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용만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92 발의연월일: 2024. 6. 18.

발 의 자:김용만·김병기·강준현

강훈식 · 김남근 · 이강일

이훈기 • 김혂정 • 박상혁

민병덕 · 조승래 · 이인영

이정문 • 한준호 • 서미화

백승아 • 이수진 • 박수현

이언주 · 정준호 · 민형배

오세희 • 박희승 • 김영환

양부남 · 김성환 · 조인철

이재관 · 이광희 · 조 국

최민희 • 이용우 • 위성락

전현희 · 문금주 의원

(3591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민권익위원회는 대표적인 반부패기구 겸 옴부즈만 기구로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에 속함. 그 역할에는 반부패 기능, 고충처리 기능, 행정심 판 기능을 포함함. 이처럼 국민권익위원회가 점차 확대되는 역할을 올바 르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관 자체의 청렴도는 물론이고 기관장의 청렴 성이 필수적으로 담보되어야 할 것임. 그러나 고위공직 후보자의 청렴성을 검증하는 국회 인사청문회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음. 위원회형 중앙행정기관인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등이 인사청문회 대상인 점, 해외의 반부패기구나 옴부즈만 기구의 수장이 국회의검증을 거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,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해서도 국회인사청문을 통한 검증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. 이에 개정안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함(안 제65조의2제2항제1호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김용만의원이 대표발의한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591호), 「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590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5조의2제2항제1호 중 "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"을 "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,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5조의2(인사청문회) ① (생	제65조의2(인사청문회) ① (현행
략)	과 같음)
② 상임위원회는 다른 법률에	②
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
해당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	
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	
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각	
인사청문회를 연다.	
1.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	1
소 재판관, 중앙선거관리위원	
회 위원, 국무위원, 방송통신	
위원회 위원장, 국가정보원장,	
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, 금융	
위원회 위원장, <u>국가인권위원</u>	국가인권위원
회 위원장, 고위공직자범죄수	회 위원장, 국민권익위원회 위
사처장, 국세청장, 검찰총장,	<u>원장</u>
경찰청장, 합동참모의장, 한국	
은행 총재, 특별감찰관 또는	
한국방송공사 사장의 후보자	
2.・3. (생 략)	2.・3. (현행과 같음)
③ ~ ⑥ (생 략)	③ ~ ⑥ (현행과 같음)